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 시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일부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또는 변경 시 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별표7서식)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변경 시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지적도’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관련 검토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개정안,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법안담당

직 위	성 명	사무실 전화	HP	E-mail
식량정책관	박수진	044-201-1801	010-2318-1367	psjin@korea.kr
농업기반과장	이재천	044-201-1851	010-3362-8237	leejc@korea.kr
사무관	노봉래	044-201-1852	010-6325-1806	roh22@korea.kr
주무관	김형대	044-201-1853	010-8288-5046	khd7924@korea.kr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야)대장”을 “(임야)대장과 지적도 등본”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자	기관(단체)명				
	주소지				
	구조		규모		수혜면적 ha

설치 및 유지 관리 상 황	설치	기관(단체)명						
		소재지						
		설치년도				설치비		
	유지 · 관 리	기관(단체)명						
		소재지						
		10a당 부담액	원	수혜자 수	명	관계면적	ha	
		관리비 연액	천원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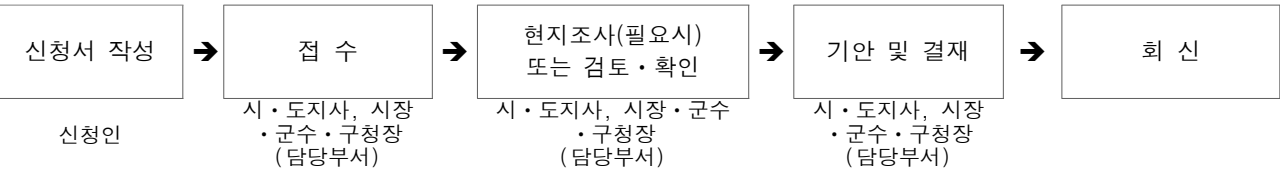
신청인 등록·변경 기관(단체)의 장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2.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적도 또는 지형도)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1.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임야)대장 3. 지적도 등본	

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



210mm×297mm[일반용지 70g/㎡ (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 ----- ----- -----<u>(임야)대장과 지적도 등본</u>--. ③ (현행과 같음)
--	--